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1. 14 선고 2020가단279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0. 11. 26

판결 선고 2021. 1. 1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가. 별지 1도면 표시 ①,②,③, ④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,나. 시흥시 D 임야 853㎡ 중 별지 2도면 표시 4, 5, 6, 7, 8, 9, 10, 11, 4의 각 점을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65㎡를 인도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D 임야 853㎡(이하 '이 사건 임야과 한다)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,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였던 원고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 단30756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. 8. 22.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선내 I-부분을 원고의 소유로,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, 피고의 소유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는 위 선내 I 부분 안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, 위 선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) 피고는 시흥시 E 임야 14,631㎡에 있는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수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.

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정해지고 원·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,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(원고는 청구취지변경신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).

2) 피고는 1996년경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을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하여 위 선내 I 부분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) 피고는 피고 소유의 축사가 위 선내부분에 위치한 면적은 축사 면적의 1/4정도에 불과한데 축사

전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도 주장하나,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,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는 위 죽사와 별개의 건축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승호

별지